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570 발의연월일: 2021. 1. 22.

발 의 자:김선교·권성동·성일종

안병길 • 정진석 • 김예지

이만희 · 윤창현 · 이철규

정운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하면서,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는 공직자의 자기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는 그 업무 범위 내의 의무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퇴직공직자의 경우에도 퇴직 전 공직에서 재직한 기간 중의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에 대해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퇴직공직자의 퇴직 전 재직기간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신고보

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법률 제 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 중 "공직자가 자기 직무"를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재직기간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신고자 포상 및 보상) ①	제23조(신고자 포상 및 보상)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	③
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u>공직자가 자기 직무</u> 와	<u>공</u> 직자가 자기 직무 또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
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	<u>기 직무</u>
지 아니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생 략)